#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18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조경태・김성원・최수진

김소희 • 이양수 • 박대출

이헌승 · 서천호 · 주진우

엄태영 • 곽규택 • 정성국

의원(12인)

## 제안이유

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 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 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주요 조업해역 상실 로 인한 어업피해와 수산업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상풍력 보급 측면에서도 제한된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여 매매 차익을 노리는 소위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로 인해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이행과 공유재인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 어업인 등 기존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해상풍력산업 지원 방안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수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여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하여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해상풍력 발전의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체계를 마련하며,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산업 및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 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 산업의 육성과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질서있는 보급을 확대하여 발전부 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

- 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 1)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
  -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 1) 예비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발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둠(안 제6조).
  - 2) 위원회의 해상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 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둠(안 제9조).
- 라. 예비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 구의 지정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하

- 고, 기본설계안을 수립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에 대해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실시함(안 제13 조).
- 3)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및 어업인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 4) 위원회는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의결을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로 지정함(안 제16조).
-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7조).
- 마.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발전지구 실시계획의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인·허가등의 의제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0조).

-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1조).
-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2조).

#### 바.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 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32조).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33 조)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34조).
- 5)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

한 항만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7조).

- 6) 해양수산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이루어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업의 경우에는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8조).
-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융자, 보조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안 제39조).

#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 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산업의 육성과 해상풍력발전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지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질서있는 보급을 확 대하여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바닷가 중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 2. "해상풍력발전시설"이란 해상풍력발전설비, 송전 및 변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용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3. "해상풍력산업"이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건설·정비·해체 ·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4.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란 풍황,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1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5.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지구를 말한다.
- 6. "기본설계"란 예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입지정보·풍황 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해상 풍력발전기의 용량 및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연계 등을 정한 기초 설계를 말한다.
- 7. "해상풍력발전사업자"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 8.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 자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 9. "풍황(風況)"이란 특정 지역의 풍력자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 한 평균풍속, 주풍향, 풍력밀도 및 난류강도 등의 제반 정보를 말 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 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밖의 해양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풍력을 위한 정보구축 및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해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품 력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산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⑧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은 제외한 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다.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 제6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 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예비지구의 지정·변경지정 및 지정해 제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에 따른 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변경지정 및 지정해 제에 관한 사항
- 4. 제19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사항
- 5.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6. 이 법에 따른 결정·허가·인가·지정·승인·신고·협의·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7.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발전지구의 조성과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 8. 예비지구·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 9.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법률<br/>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제9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유산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전력 계통, 환경·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기술 및 갈등조정 등 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그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 조정,

- 기술 자문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⑨ 그 밖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9조(추진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이하 "관

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 제10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 해상교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 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관계기관의 장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0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 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 2.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
- 3. 항만ㆍ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4. 해양환경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 5.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 6. 군사 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지역(이하 "허가지역"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허가지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 지정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해관계

자 의견수렴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풍황계측기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의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 ⑦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예비지구의 지정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 관은 예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
  - ③ 제16조에 따라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발전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예비지구는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④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본설계의 수립·확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수의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수의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1. 예비지구의 명칭 · 위치 · 면적
  - 2.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
  - 4.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기반 시설계획
  - 5. 해양환경성ㆍ해상교통안전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계획
  - 6. 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안 또는 기본설계중 중요한 변경사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

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기본설계안 또는 변경하는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확정 · 변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①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중첩하여 위치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민관협의회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 2. 발전지구의 지정 변경지정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3항에 따라 발급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
- 4.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 어업인 단체
- 2. 지역 주민 대표
- 3.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 4. 해상풍력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설계안이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관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어업인, 주민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이해관계자등"이라 한다)이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민관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⑧ 민관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의 투자규모, 수익률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참여대상 주민 및 어업인의 범위 및 제2항의 투자규모 수익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워부장과이 정한다.
- 제16조(발전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4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 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 로 지정할 수 있다.
  - 1.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할 것
  - 2.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 3.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 4.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 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전지구가 지정·고시된 후 해당 발전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도로 · 철도 · 교량 · 운하 · 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 (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양식업권의 설정
-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 · 매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 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한다)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송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접속설비의 건설비 용과 운전유지에 대한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

- 제19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지역이 예비지구로 지정된 허가사업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풍황계측기 매수협의가 이루어진 풍황계측기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시 우대하여야 한다.
  - 1.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 2.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 3.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 4.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하게 된 경우
-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6.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상풍력발 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발전지구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분할하여 단계별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1.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개요

- 2.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
- 4.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 5.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도로·교량·항만 등 공공시설의 설 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6. 해양환경 ·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7.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 8. 어업권 · 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실시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③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 의결 전에 미리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
-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 회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

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도지사 및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①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 역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제2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 가 제20조에 따라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 정·면허·협의·해제·심의·처분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

- 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 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9.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 10.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 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1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
-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7.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1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 19.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 20.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2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22.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2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 조에 따른 인가
- 2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27.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29.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 3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 구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

- ②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9호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안전진단서의 서류를 보완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발전지구 개 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

-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20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5조(착공 신고)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착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준공인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 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실 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 다.
- 제27조(풍황 계측기의 이용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13조제4항에 따른 풍황계측기 설치 등 해상풍

- 력발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발행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 선 실시한 경우 이 비용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 대상, 절차 및 납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집적화단지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 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9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허가하거나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
  -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 3.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
- 5.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 제30조(예비지구·발전지구 외의 해상풍력사업 시행) 예비지구·발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발전사업(풍황계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따른 인·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입지적정성 평가를 요청하고, 그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 제31조(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해상풍력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 2.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
  -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 4. 해상풍력기술의 정보교류
  - 5. 그 밖에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기술 개발을 촉진

- 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 풍력기업의 기술 검증을 위한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해상풍력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실증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실증단지의 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입지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국제협력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 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6조(수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상풍력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 또는 상담알 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 3. 국내외에서 해상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운영하거 나 전시장에 해상풍력발전설비를 출품하는 자
  - 4.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 제37조(항만시설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8조(수산업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이루어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 결과를 수산업 및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업의 경우에는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 평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9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융자, 보조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상풍 력발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량에 비례한 부담금(이 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부과금액·납부기한 등 부담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벌칙

- 제40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0조에서 정하는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인·허가등 절차에 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중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